

『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영호 의원 외 6인

2. 제안이유

-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제2항에 의하면 미관지구 내에서는 도로에서 2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화단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 미관에 지장이 없는 자주식 주차장과, 화단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제2항에서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을 “주차장·화단”에서 “주차장(철골조립식, 기계식 주차장에 한함)”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 조경식수를 삭제함

4.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미관지구 내에서는 도로에서 2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과 화단 설치가 불가능 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자주식 주차장과 화단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주식 주차장과 화단의 설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 따라서 본회의를 거친 후 시행할 경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시가지 교통난 해소보다는 미관 지구 본래의 목적인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가로변 미관에 부정적이며, 또한 인도부분 점용에 따라 진·출입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통행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됨.
- 참고사항으로 타시의 도시계획조례 운영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 경상북도내 10개시 중 2개시 (포항시, 경주시)
 - 경상남도내 9개시 중 2개시 (창원시, 통영시)
 - 경기도내 14개시 중 1개시 (성남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우리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